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內職能團體 入住에 관한同意案審査報告書

1992. 12. 3.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11월 25일
-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12월 3일
(제15회 정기회(휴회중) 제2차 행정재
무위원회 상정)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金榮俊)

가. 제안이유
현재 구청 사무실 사용 현황을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 행정기능과 대민봉사 차원에 비추어 협소하여 민원봉사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구청 대강당의 사무실 이용 관계로 직원교육은 물론, 각종 구민행사 사용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구청에 입주되어 있는 직능단체만이라도 구민회관 준공에 맞춰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사용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입주예정단체
 - 자유총연맹 지부(중층 10명)
 - 국가유공 단체(중층 15명)
 - 새마을관련 5개 단체(중층 25명)
 - 바르게살기협의회(중층 10명)
 - 시우회(3층 11명)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熙中)

- 현재 구청사는 직제개편등으로 課 및 係의 신설과 직능단체의 입주로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지하실을 사용하므로써, 이로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구민회관 준공에 맞춰 구민의 활용공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청에 입주해있는 기존의 5개 직능단체를 구민회관에 입주시키므로써, 확보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원의 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 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직능단체의 입주로 구민의 활용공간이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구민회관의 총 규모는 1,415명으로 그중 직능단체가 점유하는 면적은 71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어, 구민의 활용공간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質疑 및 答辯要旨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5.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6. 修正案要旨

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등포구민회관내 입주단체(5개)에서 시우회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7. 修正主要骨子

영등포구민회관내 입주단체(5개)에서 시우회를 제외하고, 자유총연맹 지부, 국가유공단체, 새마을관련 5개 단체, 바르게살기협회의 회관 입주단체로 할 것을 수정동의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內職能團體
入住에 관한同意案**

의안 번호	136
----------	-----

제출년월일 : 1992년 11월 19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同意理由

○ 현재 구청사의 사무실 사용 현황은 양적, 질적으로 늘어난 행정기능과 대민봉사차원에 비추어 협소하여 민원봉사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구청 대강당의 사무실 이용 관계로 직원교육은 물론, 각종 구민행사 사용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구청에 입주되어 있는 직능단체만이라도 구민회관 준공에 맞춰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 사용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함.

2. 主要内容

- 입주예정단체
 - 자유총연맹 지부(중층 10명)
 - 국가유공단체(중층 15명)
 - 새마을관련 5개 단체(중층 25명)
 - 바르게살기협회의(중층 10명)
 - 시우회(3층 11명)
 - 대한무공수훈자회(3층 9.5명)

3. 入住根據

- 자유총연맹지부 : 행정보조('76.2.10)
- 국가유공단체 : 보훈처 협조사항('76.7.1)

- 새마을관련 5개 단체 : 행정협조('80.9.20)
- 바르게살기협회의 : 행정협조('81.4.7)
- 시우회 : 행정협조('87.11.18)
- 대한무공수훈자회 : 보훈처협조('76.7.1)

**서울特別市永登浦區民會館內職能團體
入住에 관한同意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와 관련 영등포구민회관내 6개 직능단체(자유총연맹, 국가유공단체,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협회의, 시우회, 대한무공수훈자회)를 입주토록 한다.

**永登浦區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
案審查報告書**

199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5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12.14)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要旨

(提案說明者 : 永登浦區廳長)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를 작성,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구의회